

## 3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疑要旨	答辯要旨
○統長定數의 10% 以內에서 15% 以內로 擴大하는 理由는?	○無報酬로 獻身奉仕하고 있는 統長들의 士氣昂揚의 일환으로 子女學費補助擴大 支給
○獎學金支給對象者는?	○3年以上勤務한 統長의 子女로서 學業成績이 優秀하고, 品行이 方正한자 選別支給
○向後統數가 늘어나면 統長數도 계속 늘어나豫算이 過多하게 支出할 것으로豫想되는데豫算 確保對策은?	○豫算確保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思料됨
○15%로 擴大하는것이 꼭 必要한지?	○內務部指針으로 示達되어 他市郡에도 共通的으로 擴大될 것임
○他部分에도豫算이 많이 必要한데 統長子女獎學金支給에 꼭豫算을 投入해야 하는지?	○豫算이 比較的 많이들지 않고, 無報酬로奉仕하는 統長士氣昂揚을 위해 必要함
○士氣昂揚을 위해 統長에게 月20萬원 선의 報酬支給하는方案을 上級機關에建議 要望	○機會있을때 建議하겠음

## 4. 討論要旨

## 가. 賛成(委員 5名全員)

- 無報酬로 獻身奉仕하고 있는 統長들의 士氣昂揚側面에서 統長子女獎學金 擴大支給이 必要
- 또한 全國 市郡에 共通의으로 適用된다는 점에서 内務部準則案대로 擴大支給이 安當할 것으로思料됨

## 나. 反對(反對委員 없음)

## 5. 審查結果

## ○原案可決

安山市廳 및 洞事務所所在地位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
## 審查報告書

## 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1991. 7. 16

○提出者 : 安山市長

나. 回附日字 : 1991. 7. 23

다. 上程日字 : 第5回安山市議會(臨時會)  
第1次 安山市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등 審查特別委員會('91. 7. 24)

## 2. 提案說明要旨

(提案說明者 : 總務局長 李奎承)

## ○提案理由

88.10.1日字 分洞當時 廉舍 未確保로  
臨時廉舍에서 洞事務所 廉舍竣工으로  
移轉에 따른 所在地 變更

## ○主要骨子

機關名	現 行	改 定
古棧1洞	安山市古棧洞520-4	安山市古棧洞659-6
聲浦洞	安山市聲浦洞584	安山市聲浦洞199-1

## 3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問要旨	答辯要旨
○市廳은 所在地 變更事項이 없는데 왜 條例名稱에 市廳이 들어가는지?	○條例名稱이 원래 “安山市廳 및 洞事務所所在地位 관한條例”로 되어 있음
○洞事務所 所在地 住所를 變更하는 것인지?	○洞事務所 所在地가 變更되었는데 條例上 所在住所가 잘 못되어 있어 變更하는 것임.

## 4. 討論要旨

## 가. 賛成(委員5名全員)

○古棧1洞, 聲浦洞事務所 所在地變更은  
廳舍가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現實과  
맞지 않는 條例를 당연히 改正하여야  
하는 關係로 이의가 없음

## 나. 反對(反對意見 開放)

## 5. 審查結果

## ○原案可決

## 安山市地方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

## 審查報告書

## 1. 審查經過

## 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1991.7.16

○提出者 : 安山市長

## 나. 回附日字 : 1991.7.23回附

다. 上程日字 : 第5回安山市議會(臨時會)  
第1次 安山市統長子女獎學  
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等  
審查特別委員會('91.7.24)

## 2. 提案說明의 要旨

## (提案說明者:總務局長 李圭承)

## ○提案理由

內務部指針에 依據 地方稅入徵收褒賞  
金支給範圍(要件)을 強化하는 內容으  
로 하는 條例改正코자 함.

## ○主要骨子

- 褒賞金의 支給範圍를 과년도 未收額  
을 徵收한 公務員에서→會計年度末  
로 부터 1年이 經過한 過年度 미수  
액을 徵收한 公務員으로 하고
- 창발적인 提案으로 稅政發展 및 稅  
入增大에 이바지한 公務員 및 民間  
人은 削除

## 3. 質疑 및 答辯要旨

## 質疑要旨

○地方稅徵收公務員  
들의 徵收意慾을  
低下시키거나 創意  
的으로 徵收하는  
公務員의 士氣低下  
시킬要因은 없는  
지?

○上級機關에서 指示  
된 것인지?

## 答辯要旨

○創案公務員은 稅入  
徵收褒賞金의 適用  
의에 여타 部門에  
서 褒賞등을 받을  
機會가 많음

○內務部指針에 외거  
全國的으로 統一된  
것임.

## 4. 討論要旨

## 가. 찬성(委員 5명전원)

○地方稅徵收 公務員의 士氣低下 要因은  
있으나 이원화된 褒賞金支給 基準을  
單一化 하고

○褒賞金 濫發要因을 좀더 規制했다는  
점에서 理論의 여지가 開放.

## 나. 反對(반대의견 開放)

## 5. 審查結果

## ○原案可決

## 安山市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

## 審查報告書

## 1. 審查結果

## 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

○提出日字 : 1991. 7. 16

○提出者 : 安山市長

## 나. 回附日字 : 1991. 7. 23

다. 上程日字 : 第5回安山市議會(臨時會)  
第1次 安山市統長子女獎學  
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  
案等 審查特別委員會  
('91. 7. 24)